KOTRA 경제통상 리포트

일련번호 :EU23-07
발 간 일 :2023.4.20
보 고 자 :브뤼셀무역관 김도연

유럽의회, EU 탄소국경조정제(CBAM) 최종 승인(4.18)

◈ 유럽의회, 본회의에서 CBAM 법안 통과로 이사회 승인 후 발효될 예정
◈ 10월부로 전환기간 개시되며 '26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본격 시행
◈ 화학, 폴리머, 전구체, 다운스트림 등 대상품목 확대 검토 예정으로 예의주시 필요

□ 개요

○ 유럽의회, 지난 2.8일 의회 상임위 통과된 CBAM 법안 관련 본회의(4.18) 표결에서 최종 승인 * 찬성(487표), 반대(81표), 기권(75표)

- 이 외, 같은 날 진행된 EU-ETS 표결도 가결 찬성(413표), 반대(167표), 기권(57표)

<유럽 배출권거래제(EU-ETS) 개정안 주요 내용>

· **(배출목표)** '30년 탄소배출 감축('05년 대비) 목표 43% → 62% 상향 조정
· **(무상할당)** 무상할당 폐지 '26년~'34년 합의(CBAM 연계)
· **(대상분야)** 해상운송 분야 추가, 5천톤(GT) 이상의 선박에 대해 배출권 구매 의무화
· **(ETS II)** 도로운송 및 건물 분야의 경우, 별도 제도(ETS II)를 신설해 '27년부 적용
· **(기금지원)** 기존 기금(혁신기금·현대화기금) 증액, 사회기후기금 신규 설립 등 지원 폭 확대
· **(수출 탄소누출)** 역내 수출품의 탄소누출 위험 평가(~'25년)하고, 47.5백만개의 무상할당권을 수출 관련 탄소누출 예방에 투입

○ 이번 가결된 법안은 '22.12월 집행위·의회·이사회의 3자 합의된 내용에 대한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으로, 이제 EU 이사회 승인만 남은 상황

- 이사회 승인 시, 관보 게재되며 게재 후 이튿날부터 발효 예정

· **(추진경과)** 집행위 초안 발표('21.7월) → 이사회 일반적 접근 채택('22.3월) → 의회 입장 채택('22.6월) → 입법기관간 3자합의 도출('22.12.18) → 의회 환경위 합의안 채택('23.2.8) → 의회 본회의 승인('23.4.18) → **이사회 승인**(예정) → **관보 게재**(예정) → **발효**(예정)

□ 의회 승인된 CBAM 주요 내용

가. 적용범위

○ **(대상품목) 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력, 수소** 등 총 **6개** 품목

<CBAM 적용 대상 품목(집행위 초안대비 추가된 품목)>

품목	세부품목(품목코드)
시멘트	252310, 252321, 252329, 252390, **250700, 252330**
전력	271600
비료	280800, 2814, 283421, 3102, 3105(제외품목 : 310560)
철강	72(일부 철강류 제외*), 7301, 7302, 730300, 7304, 7305, 7306, 7307, 7308, 7309, 7310, 731100, **7318, 7326, 260112** * 제외품목 : 7204, **72022, 72023, 720250, 720270, 720280, 720291, 720292, 720293, 72029910, 72029930, 72029980**
알루미늄	7601, 7603, 7604, 7605, 7606, 7607, 7608, 760900, **7610, 761100, 7612, 761300, 7614, 7616**
수소**	**280410**

* 일부 하위품목이 추가되었으며, 철강의 경우 특정 전구체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 신규 포함

** 현재 EU의 수소 수입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, 그린딜 이행으로 재생가능 수소 사용 급증이 예상돼 수소의 탈탄소화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

○ **(적용국가)** 일부국가* 제외한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

* 4개국(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, 스위스) 및 외부영토(세우타 등)

○ **(배출범위)** 제품에 내재된 **직접 또는 직·간접 실질 탄소 배출량**

- 철강·알루미늄·수소는 직접배출만, 시멘트·전력·비료는 직·간접배출 모두 포함

  * 전구체(260112)의 경우 간접배출도 포함.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은 하단의 별첨I 참고 바람

- 실질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, 기본값(Default value)으로 배출량을 산정

· **(기본값)** ①수출국 내 동일품목의 평균 탄소배출 집약도(average emission intensity)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, 만약 동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, ②EU 역내 동일품목 생산기업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X%*의 평균 탄소배출 집약도로 기본값 설정

* 전환기간 중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집행위가 추후 시행령을 통해 X값 마련할 예정

○ **(배출량 검인증)** 제품 내재 배출량은 공인 인증기관(Verifier accredited) 검증이 필요하며, 인증기관 관련 세부기준은 추후 집행위가 시행령·위임법을 통해 마련 예정

나. CBAM 신고 절차

○ **(절차)** ①공인 수입신고자는 ② CBAM 인증서 구매 후, ③매년 5.31일까지 CBAM 인증서 및 신고서 제출, ④6.30일까지 잔여 인증서를 청산

① **(수입신고자 신청)** 사전 수입허가 신청 필수이며, 수입자가 소재한 관할 당국의 CBAM 등록소(아래 다. 운영형태 참조)를 통해 신청서 제출

- '24.12.31.부터 신청 가능하며, 관할당국은 여타 회원국 및 집행위와 15일 내(근무일 기준)로 심사 진행. 1개국 내 신고자 지위 획득 시, 전 역내 통용됨

· (필요서류) 연락처, EORI 번호, 수입품 정보(수량·가격), 역내 경제활동 정보, 범죄기록증명서(5년), 재정상황 증빙 등

② **(인증서 구매)**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*를 구매. 인증서는 EU 배출권거래제(ETS)와 연계 적용됨

* 인증서는 중앙 플랫폼(central platform)에서 구매하며, 인증서 1개 = 온실가스 배출량 1톤 적용

<참고 : EU-ETS 연계 적용>

· **(CBAM 인증서 가격)**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가 적용, 매주 첫 근무일 관보 게시

· **(수량 차감)** 역내 적용되는 EU-ETS 무상할당 수준을 반영, CBAM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하며 무상할당제는 '34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

ETS 연도별 폐지 목표: '26년(2.5%), '27년(5%), '28년(10%), '29년(22.5%), '30년(48.5%), '31년(61%), '32년(73.5%), '33년(86%), '34년(100%)

<CBAM 비용 산정>

③ **(신고서·인증서 제출)** 매년 5.31일까지 CBAM 등록소에 신고서, 인증서 등 수입신고자의 서류 제출 의무

- **(신고사항)** 제품 중량(톤단위), △제품의 내재 배출량(CO2e), △수출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, △상응하는 인증서 수량 정보, △인증기관이 발행한 검증서류* 사본

· (검증서류 포함사항) 생산시설정보, 검증일, 품목정보, 보고기간, 직접 배출량, 투입재료별 수량 및 내재배출량(복합재의 경우), 인증기관 정보, 허위 없음을 보고하는 검증자 진술서 등

· **(참고 : 수출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)**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, 인증서 수량의 차감 요청 가능. 집행위는 지불된 연평균 탄소가격의 유로화, 인증서 감축 조정 등 세부기준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

- **(인증서 확보)** 수입자는 매 분기말 연초부터 수입된 물량의 누계 탄소배출량 기준, 최소 80%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등록소 내 고유계정에 확보해 둬야 함

- **(환불)** 전년도 구매한 인증서에 대해 6.30일까지 환불 요청 가능하나, 환급 수량은 전년도 수입자가 구매한 총 인증서의 1/3로 제한

* 인증서 환불가격은 구매 당시 가격이 적용

- **(인증서 삭제)** 매년 7.1일, 계정에 남아있는 인증서는 보상없이 일괄 삭제

- **(서류보관)** 신고 연도 후 4년간 제출 정보의 보관 필요

<CBAM 절차>

다. CBAM 운영 형태

○ 회원국별 관할당국을 지정해 운영하며, 집행위는 CBAM 등록소(Registry) 및 공통 중앙 플랫폼(Common central platform)을 설치해 통합적 관리 지원

○ **(CBAM 등록소)** 수입신고자의 계정 및 인증서 정보*를 담고 있는 D/B

· 수입신고자 및 제조사 정보, EORI 번호, CBAM 계정번호, 인증서의 가격 및 구매, 환불·취소일자 등

- 집행위는 승인된 수입신고자에 대한 고유계정을 생성하고, 해당 계정번호를 통보 → 수입신고자의 등록소 접근 권한 확보

* 집행위는 시행령 통해 등록소의 D/B 및 데이터 전송, 진행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

○ **(공통 중앙 플랫폼)** 인증서의 구매, 환불, 취소 등을 전담하며 관련 정보는 매일 근무 종료시점에 CBAM 등록소로 전송됨

- 집행위는 플랫폼-등록소 간 신속한 정보흐름을 촉진하고,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 감독을 위해 관할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 강화할 예정

라. 전환기간('23.10.1~'25.12.31) 의무사항

○ **(보고의무)** 수입자*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행위에 보고서 제출. 즉, 전환기간 시행 후 첫 번째 보고서는 '24.1.31까지 제출되어야 함

* 수입자가 역내 설립되지 않았거나, 세관 대리인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이 수행

- 보고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집행위에서 보완요청 예정

<신고 내용>

· 제품의 총 수량(톤당. 전기의 경우 MWh)
· 제품에 내재된 실질 직·간접 탄소배출량(CO_2e) (집행위가 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마련할 예정)
·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(보조금 등 기타 보상 고려)

○ **(재재조치)** 보고의무 미준수 또는 보완요청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 부과

○ **(기타)** 직접 및 간접 배출 산정, 벌금 규모,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등 세부 내용은 집행위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

마. 제재 조치

○ 기한 내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당 1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, 금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

*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

○ 역내 허가되지 않은 수입자가 규제적용 제품 반입 시, 동 벌금의 3~5배 부과

바. 집행위 평가 및 보고

○ ('24년말까지) 적용대상 품목의 다운스트림군 중, CBAM 적용이 필요한 품목을 식별하는 보고서 마련

○ ('25년말까지) 아래 사항을 평가 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서 제출

- 적용배출범위 및 대상품목 확대*, 기후대응 관련 글로벌 논의 진전사항, CBAM 시스템, 간접배출량 산정방식, 개도국 영향

<CBAM 적용 확대 고려중인 범위·대상품목>

· 직접배출 보고로 지정된 철강, 알루미늄, 수소 품목에 대한 간접배출 포함 여부
· CBAM 적용대상 제품의 운송 및 운송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내재 배출량
· 유기화학물질·폴리머 등 기타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품목
· 적용대상 제품에 투입되는 소재(전구체) 등

○ ('27년말까지) CBAM 이행 모니터링 후 보고서* 제출하고, 이후 2년 주기로 시행

* 수출 관련 탄소누출, 역내 영향, 적용대상품목, 비용 상승, 산업계 영향, 셔플링 등 국제교역, 개도국 영향, 우회관행, 벌금, 거버넌스 등

○ ('26년부터) 전환기간 종료 후 2년 주기로 역내 수출상품의 탄소누출 위험을 평가하고, 필요시 WTO 규정에 합치되는 입법 제안

사. 기타

○ **(적용 면제)** 최소기준(De Minimis)을 두고 150 유로 이하의 소형 품목(여행자 수화물 포함) 또는 군사용도 물품은 규정 적용 면제

○ **(우회 방지)** △최소기준 부합용 인위적 선적 분할, △HS 코드 변경위한 약간의 제품 변형* 등 우회방지 모니터링 강화. 제소 발생 시 9개월 간 조사 시행

* 변형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

○ **(기후클럽)** 기후클럽(Climate Club)을 창설해 국별 기후정책 이행을 촉진하고, 글로벌 탄소가격 책정 프레임워크 기반 마련 추진

○ **(개도국 지원)** 최빈국 내 기후변화 대응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

○ **(한시적 예외조치)** 역외국에 예측불가능하고 예기치 않은 대규모 긴급 상황 발생 시, 타격받은 3국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예외 조치 시행 가능

아. 시행령 및 위임법률

○ 집행위는 추후 아래 항목에 대한 시행령 및 위임법을 채택, 규정의 모호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

구분	내용
시행령 (implementing acts)	· 수입신고 신청 및 승인, CBAM 신고(Declaration), 내재배출량 산정 및 검증, 시스템경계설정, 배출계수, 단순재 및 복합재 구분, 원산지 국가에서 납부한 탄소비용, CBAM 등록소, 검인증기관(인증기관 식별), 인증서 가격, ETS 무상할당제와 CBAM 인증서 수량 조정, 전환기간 중 CBAM 보고, 관할당국과 관세당국간 커뮤니케이션, 적용품목 등
위임법 (delegated acts)	· 적용대상국 수정, 검인증기관(인증기관 승인 조건, 검증인 관리감독, 상호인정 등), CBAM 인증서 관리(구매·환불 등), 우회방지

· (참고) 시행령 및 위임법은 집행위가 채택하는 법률로, 위임법은 법안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 없이 해당 법안을 보완해나가며 시행령은 주로 법안의 구체적·세부적 사안(일정, 절차 등)들을 다룸

□ 전망 및 시사점

○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50년 그린딜 달성위해 세계 최초로 마련된 CBAM은 EU 이사회 최종 승인을 끝으로 발효될 예정

- 23.10.1부 전환기간(보고의무) 시행 후, 26.1.1일부 본격 규제(인증서 구매) 시행

○ 인증기관, 배출 산정방식 등 법안 주요 사항의 대부분이 발효 후 시행령·위임법률을 통해 수립돼, 기업의 체계적 사전 대응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

- 추후 마련될 집행위 법안의 면밀한 분석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

○ 우리의 대EU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의 간접배출 제외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으나, 추후 간접배출의 포함 여부 검토될 예정으로 동향 예의주시

- 이 밖에도, EU는 유기화학품, 폴리머, 전구체, 다운스트림 등 탄소누출위험이 있는 기타 제품 및 서비스로 CBAM 규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

* 집행위, 유럽의회 및 이사회로 '30년까지 적용대상 품목 확대 제안안 상정 계획

· (화학제품) 화학·에너지 산업 조사기업 ICIS에 따르면, 화학제품의 경우 시멘트 등 타제품 대비 탄소배출 산정의 복잡함으로 시행초기 단계에서는 대상품목으로 미지정 됐으나, 추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. 만일 포함될 시 석유화학 보다는 정유제품 등 업스트림 군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

· (다운스트림) Pascal Canfin 의회 환경위원장, 터키산 철강(CBAM 적용품목)으로 모로코에서 자동차를 조립 후 역내 수입 시 CBAM 적용에서 예외 된다며 규제의 불공정성을 강조('22.12월, Euractiv)

○ 해당 기업들은 10월부 시행될 CBAM 대응위해 신속하게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 이행이 요구되며, 탄소 배출량 측정·보고·검증(MRV*) 대비 필요

- 탄소배출이 큰 산업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, 탄소 포집기술 활용 등 친환경적 생산 통해 EU 탄소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해야 할 것

* MRV : 탄소 배출량의 측정(Measurement), 보고(Reporting), 검·인증(Verification) 체계로, 우리정부는 현재 한국 MRV를 역내에서도 통용되는 방안을 EU와 논의 중

○ 이 외, 對EU 철강 수출에 영향이 예상되는 국제 협정 동향에 대해서도 주시

- EU, 미국과 지속가능한 철강·알루미늄 협정(GASSA) 추진 중('23.10월 타결 목표)

- 이를 통해 비시장적 과잉 공급에 대응하고 친환경 생산을 촉진코자 하나, 협정 비참여국 대상 시장접근 제한 가능성이 언급되어 논의 동향 주시 요망

- 동 협정 및 세이프가드 등 CBAM과 동시에 對EU 철강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

<(참고) EU-미 지속가능한 철강·알루미늄 글로벌 협정(GASSA) ('21.10.31 발표)**>**

* GASSA :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

· (개요)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되어온 철강·알루미늄 관세 분쟁 중단에 합의*하며, 비시장적(Non-Market) 과잉 공급 대응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발표

* '18년부터 시행된 美무역확장법 232조 적용(철강 25%, 알루미늄 10% 관세부과) 철회 및 EU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중단

· (주요내용) 뜻이 맞는 국가 간 협력 통해 철강·알루미늄의 비시장적 과잉공급 대응 및 친환경 생산 촉진

- (EU-美 협력) 양측은 △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 모니터링, △동 산업 내 무역구제 및 세관 분야 협력, △ 비시장 과잉생산 대응방안* 마련 예정

  * 실무그룹(Working Group) 통해 탄소집약도 산정 관련 공통의 방법론 개발 및 관련 데이터 공유 등

- (역외국 참가) 동 글로벌 협정에는 일정 가입요건* 충족하는 역외국 참여 가능하며, 협정 비참여국에 대해서는 참여국 내 시장접근 제한 추진

  * 저탄소 철강·알루미늄의 생산·교역 촉진 및 관련 정부정책 수립, 해당산업의 비시장관행 금지 등

- (일정) EU-미국은 '23년까지 협정 초안 도출 목표로 현재 논의 진행 중

  * 동 협정이 EU-미 현행 정부에서 수립된 바, 양측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'24년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분석

※ [별첨 I]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

※ [별첨1]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

○ 단순재 및 복합재로 구분되며, 구분기준은 추후 시행령 통해 수립

❶ 단순재(Simple goods)

- 산식 :

$$SEE_g = \frac{AttrEm_g}{AL_g}$$

· SEEg : 제품 g의 탄소배출량(이산화탄소 환산량, 'CO2e')
· AttrEmg : 제품 g의 직간접 배출량
· ALg : 보고기간 동안의 제품g의 생산량

☞ **CO2e 배출량 = (제품의 직접 + 간접 탄소배출량) / (제품 생산량)**

· 제품의 탄소배출량 : 사업장 내 조직경계(system boundaries)에서 발생된 배출량 기준. 조직경계 범위는 추후 집행위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할 계획
· 간접 배출량 : 제품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의 CO2e로 환산량으로, 기본값(Default values)으로 산정. 단, 생산시설과 전력생산원 간 직접적 기술 연관성을 입증하거나, 또는 해당 전력량에 대한 전력구매계약(PPA)을 체결한 경우 실질 내재 배출량 적용 가능. 집행위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기본값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

❷ 복합재(Complex goods)

○ 배출량 및 투입된 모든 원재료의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

- 산식 :

$$SEE_g = \frac{AttrEm_g + EE_{ImpMat}}{AL_g}$$

· SEEg : 제품 g의 CO2e
· AttrEmg : 제품 g의 직간접 배출량
· ALg : 보고기간 동안의 제품g의 생산량
· EE ImpMat : 원재료·중간재 등 생산에 투입된 물질의 탄소배출량

☞ **CO2e 배출량 = [(제품의 직접 + 간접 배출량) + 투입물 배출량*] / (제품 생산량)**

* EE ImpMat = $\sum_{i=1}^{n} M_i \cdot SEE_i$ 즉,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양 X 해당원재료들의 배출량